

전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91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14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19. 12. 20.

판결 선고2020. 2. 7.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145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8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재성

판사김자림

판사신태광